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1998. 9. 18
- 나. 제안자 : 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1998. 9. 18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98. 9. 1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강석준)

가. 제안이유

-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자치 12200-1252. 98. 6. 23)에 의거 「계」 제 폐지 및 일부 업무조정과 소재지 변경을 위하여 조례 개정

나. 주요골자

- 자동차 관련업무 일부 조정 → 세무국으로 이관하여 세무업무 일원화
 -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신고분 고지서 발부
 - 1가구 2차량 중복세 자료 발취 통보
 - 지방세 채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부
 -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

- 차량·건설기계 등록업무 일원화
 - 도로과의 건설기계 등록업무 차량등록사업소로 조정
- 차량등록사업소 소재지 변경 (안 제2조)
 - 현행 : 부천시 원미구 여월동 52-1번지
 - 개정 :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번지

3.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명칭만 변경하는 것으로 반대의견 없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호
의결년월일	98. 9. 22 (제64회)

제출년월일 : 1998. 9. 18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제안이유

-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자치 12200-1252. 98. 6. 23)에 의거 「계」 제 폐지 및 일부 업무조정과 소재지 변경을 위하여 조례 개정

주요골자

- 자동차 관련업무 일부 조정 → 세무국으로 이관하여 세무업무 일원화

-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신고분 고지서 발부
 - 1가구 2차량 중과세 자료 발체 통보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부
 -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
- 차량·건설기계 등록업무 일원화
 - 도로과의 건설기계 등록업무 차량등록사업소로 조정
- 차량등록사업소 소재지 변경 (안 제2조)
 - 현행 : 부천시 원미구 여월동 52-1번지
 - 개정 :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번지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

제1조(설치) 늘어나는 차량등록과 관련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치) 사업소는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사업소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
2.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당설정 및 말소
3. 이륜차 등록 및 지도단속
4.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행정 처분
5. 기타 차량 및 건설기계에 관한 사항

제4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업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사업소에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